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10. 18 선고 2019가단809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답 449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3. 12. 16. 접수 제311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다.

판사최문수

별지